

에코델타시티 금강펜테리움 에코리버 입주자모집공고

청약 Home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행사 등

구분	사업주체 및 시행사	시공사
상 호	주식회사 펜토건설	(주)금강주택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04, 4층 4호(역삼동, 금강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19~21층 (대치동, 금강타워)
법인등록번호	110111-5712933	110111-0313314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 사 명	(주)천일건축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주)티에스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광명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지티엘이엔지
감리금액	1,449,286,300원	551,466,300원	113,421,000원	130,900,000원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 공금대상 및 공금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과- 47757호(2026.09.1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금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5048-5번지 일원 (에코델타시티 공동6BL)

■ 공금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2~18층 6개동 총 35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31세대(기관추천 35세대, 다자녀가구 35세대, 신혼부부 54세대, 노부모부양 10세대, 생애최초 61세대, 신생아 36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9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금대상

(단위: m,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기타 공용면적 (지하 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신생아	생애 최초	계		
2026000443	01	059.9986A	59A	59.9986	23.9172	83.9158	54.5766	138.4924	56.4035	183	19	18	28	5	31	18	119	64	12
	02	059.9992B	59B	59.9992	24.4492	84.4484	54.5773	139.0257	56.4040	175	16	17	26	5	30	18	112	63	12
				합계						358	35	35	54	10	61	36	231	127	24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 시) 주택형	059.9986A	059.9992B
건본주택 등의 약식표기	59A	59B

■ 공금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원)

주택형	약식 표기	공금 세대 수	동구분 (라인)	층구분	세 대 수	공금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계약 후 30일 이내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059.9986A	59A	183	601동 1,2,3호 602동 1,2,3호 603동 1,2,3호 604동 1호 605동 1호 606동 1호	1층	10	132,214,000	299,786,000	432,000,000	5,000,000	16,6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151,200,000		
				2층	12	132,214,000	309,786,000	442,000,000	5,000,000	17,1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154,700,000		
				3층	12	132,214,000	318,786,000	451,000,000	5,000,000	17,55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157,850,000		
				4~12층	105	132,214,000	327,786,000	460,000,000	5,000,000	18,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161,000,000		
				13층 이상	32	132,214,000	336,786,000	469,000,000	5,000,000	18,45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164,150,000		
				최상층	9	132,214,000	378,786,000	511,000,000	5,000,000	20,55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178,850,000		
			604동 1호 605동 1호 606동 1호	최상층 (12층)	3	132,214,000	378,786,000	511,000,000	5,000,000	20,55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178,850,000		
059.9992B	59B	175	601동 4호 602동 4호 603동 4호 604동 2호 605동 2호 606동 2호	1층	4	132,216,000	298,784,000	431,000,000	5,000,000	16,55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150,850,000		
				2층	6	132,216,000	307,784,000	440,000,000	5,000,000	17,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154,000,000		
				3층	6	132,216,000	316,784,000	449,000,000	5,000,000	17,45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157,150,000		
				4~12층	51	132,216,000	325,784,000	458,000,000	5,000,000	17,9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160,300,000		
				13층 이상	13	132,216,000	335,784,000	468,000,000	5,000,000	18,400,000	46,800,000	46,800,000	46,800,000	46,800,000	46,800,000	46,800,000	163,800,000		
				최상층	3	132,216,000	377,784,000	510,000,000	5,000,000	20,5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178,500,000		
			604동 2호 605동 2호 606동 2호	최상층 (12층)	3	132,216,000	377,784,000	510,000,000	5,000,000	20,5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178,500,000		
			601동 5호 602동 5호 603동 5호	1층	3	132,216,000	309,784,000	442,000,000	5,000,000	17,1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154,700,000	
				2층	3	132,216,000	318,784,000	451,000,000	5,000,000	17,55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157,850,000		
				3층	3	132,216,000	327,784,000	460,000,000	5,000,000	18,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161,000,000		
				4~12층	27	132,216,000	346,784,000	479,000,000	5,000,000	18,95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167,650,000		
				13층 이상	14	132,216,000	355,784,000	488,000,000	5,000,000	19,4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170,800,000		
				최상층	3	132,216,000	399,784,000	532,000,000	5,000,000	21,6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186,200,000		
				604동 3호 605동 3호 606동 3호	1층	3	132,216,000	309,784,000	442,000,000	5,000,000	17,1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154,700,000
					2층	3	132,216,000	318,784,000	451,000,000	5,000,000	17,55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157,850,000	
3층	3	132,216,000			327,784,000	460,000,000	5,000,000	18,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161,000,000				
4~11층	24	132,216,000	355,784,000		488,000,000	5,000,000	19,4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170,800,000					
최상층	3	132,216,000	399,784,000		532,000,000	5,000,000	21,6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186,200,000					

■ 분양대금 납부계획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획번호	예금주명
분양대금 납부계획	우리은행	1005-204-814680	주택도시보증공사 납부피에프금융지사

■ 발코니 확장 공금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공금금액	계약금(10%)	중도금 1차(10%)	중도금 2차(10%)	잔금(70%)
		계약시	2027.03.15.	2028.03.15.	입주자정일
59A	4,210,000	421,000	421,000	421,000	2,947,000
59B	6,600,000	660,000	660,000	660,000	4,620,000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계획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획번호	예금주명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획	우리은행	1005-404-803861	주택도시보증공사 납부피에프금융지사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점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점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본 단위 점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 호 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금 세대수의 10% 범위 : 35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금 세대수의 10% 범위 : 35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금 세대수의 15% 범위 : 54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금 세대수의 3% 범위 : 10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받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